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92

발의연월일: 2024. 12. 3.

발 의 자: 박성민·강승규·정동만

김위상 · 서일준 · 박덕흠

백종헌 · 강민국 · 최보윤

정희용 · 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파기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직접 구매하는 해외제품이 안전성조사 없이 국내에 반입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 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하여금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 관단계에 있는 제품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 폐기 등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 2 신설).
- 다.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의 결과 등을 공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 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권고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등을 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구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제9조의4 및 제1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매 해외제품(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9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0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 3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내용과 결과 제공 및 제 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물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할수 있다.

-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 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판매중 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삭제 등을 권고받은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권고, 제10조의2제 1항에 따른 권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안전성조사 결과"를 "안전성조사 결과, 제9조의4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안전성조사"를 "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 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는 국내 법인

-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 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권고,"를 "권고, 제10조의2에 따른 삭제 등의 권고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품안전에"를 "제품 및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4. "직접구매 해외제품"이란 개
	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해
	외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
	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
	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
	다. 이하 같다)에서 직접 구
	매하는 제품을 말한다.
<u><신 설></u>	5. "해외통신판매중개자"란 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
	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
	른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u>자를 말한다.</u>
<u> <신 설></u>	제9조의4(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등)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접구 매 해외제품(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포함한 다)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 하여는 관세청장과 합동으로 통관절차 완료 전에 안전성조 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한물품(직접구매 해외제품만 해당한다)에 관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

<u>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u>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후단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제9조의3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통관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제10조의2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를 할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해외제품 안전성조사 내용과결과 제공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의 조치 등의 세부적인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삭제등의 권고 등) ① 중앙행 정기관의 장은 제9조의4제1항 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

<신 설>

전성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 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에서의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 품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 다)를 권고할 수 있다.

- 1. 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 2.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조· 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 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외통신 판매중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 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기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제품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 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권고나명령의 전부 또는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 0일 이내에 <u>제10조제1항에 따</u>른 권고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u> 당당으로 성하는 사항을 소판</u>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삭제등의 권
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
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사업
자 또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
라 삭제등을 권고받은 해외통
<u>신판매중개자</u>
②
제10조제1항에 따
른 권고, 제10조의2제1항에 따
른 권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 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 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u>사업</u> <u>자</u>는 같은 항에 따른 신청 여 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 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u>안전</u> 성조사 결과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제품사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이 <u>안전성조사</u>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소관 중앙행정기

	· ③사업
	<u>자 및 해외통신판매중개자</u>
	④ (현행과 같음)
제	15조의2(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	관한 공표) ①
	<u>안전</u>
	성조사 결과,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
	전성조사 결과
	②
	<u>안전성조사(직접구매 해외</u>
	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포함한
	다)

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신 설> ______

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 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의 이행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권고 해제의 신청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 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 통신판매중개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 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 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 매중개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해외통신판 매중개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해외통신판매중개자는 제1 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 버물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 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 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통신판매중개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해외통신판매중개자와 유효한

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 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 ·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 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9조제2항에 따른 조사내용
 과 결과
- 2. 제10조에 따른 수거등의 <u>권</u><u>고</u>, 제11조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에 관한 정보

2의2. • 2의3. (생략)

3. 그 밖에 <u>제품안전에</u> 관한 정 보

② · ③ (생 략) 제27조(과대료)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제<u>1항 및 제2항</u>에 따른 과 <u>④</u>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1. 제9조제2항 및 제9조의4제3
<u>ठ</u> ो
2 <u>권</u>
고, 제10조의2에 따른 삭제등
의 권고 및
2의2. • 2의3. (현행과 같음)
3 <u>제품 및 직접구매</u>
해외제품 안전에
② · ③ (현행과 같음)
세2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
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
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에
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